

「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5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6월 10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청년연합회의 복지 · 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단체 경비지원 사항 추가(안 제3조)
- 인용 자치법규명 현행화(안 제3조 ~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5. 30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청년연합회의 복지·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단체 경비지원 사항 추가(안 제3조)
- 인용 자치법규명 현행화(안 제3조 ~ 제5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지원범위·절차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청년연합회에 대한 지원 목적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합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경비 지원)에서 단체 경비지원 목적에 ‘복지증진 등’을 추가하였고, 지원내용에 ‘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경비’를 추가하였음.
- 안 제3조~제5조에서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법령을 수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평창군청년연합회에 대한 지원 목적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연합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, 현행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불임

관계 법령

청년기본법

- 제24조의3(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)**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
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·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0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청년연합회의 복지·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인용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협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단체 경비지원 사항 추가: 안 제3조

- (기존) 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
- (개정) 역량강화, 봉사활동 및 복지 증진 등
- (신설)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, 체육대회 경비

나. 인용법령·자치법규명 협행화: 안 제3조 ~ 제5조

- (기존) 자원봉사활동기본법 → (개정)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
- (기존) 「평창군 포상조례」 → (개정)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
- (기존)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→ (개정)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

1) 입법예고(25. 3. 31. ~ 25. 4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469호, 행정담당관-8108(2025. 3. 28.)호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5032(2025. 3. 31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5032(2025. 3. 31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3067(2025. 4. 2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6727(2025. 4. 29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7931(2025. 5. 26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”을 “역량강화, 봉사 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”를 “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, 체육대회 경비
제4조 중 “「평창군 포상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포상 조례」”로 한다.
제5조 중 “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를 “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경비 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</u>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, 흥보비</p> <p>2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4조(표창 등)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<u>「평창군 포상조례」</u>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준용)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<u>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u>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경비 지원) ----- ----- <u>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</u>----- ----- ----.</p> <p>1. 「<u>자원봉사활동 기본법</u>」 제7조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, 체육대회 경비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4조(표창 등) ----- ----- ----- <u>「평창군 포상 조례」</u>-----.</p> <p>제5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<u>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u>-----.</p>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청년기본법 [법률 제19253호]

제24조의3[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]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·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청년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720호]

제21조의4[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]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가. 청년 고용촉진, 창업지원, 능력개발 지원, 주거지원, 복지증진, 금융생활 지원,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

나.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

다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 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·홍보·교육 지원

3.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3조(경비 지원) 각 호: 관내 청년단체의 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경비 보조금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관내 청년단체(평창군청년연합회) 연간 보조금액: 3,500,000원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김 두 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